

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길윤옥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발의연월일 : 2008. 4.

발 의 자 : 길윤옥 · 구자근 · 김상조
박세채 · 우진석 · 윤서규
이갑선 · 정근수 · 허 복
황경환(10인)

1. 제 안 이 유

- 공공시설의 수영장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가임(可妊)여성에 대하여 생리기간중 수영장 사용료 감면 혜택
- 저출산 시대 여성의 원활한 활동지원 등 여성들의 복리증진 도모

2. 주 요 내 용

-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 대하여 월 사용료의 10%를 감액토록 규정(안 제13조제5호)

3. 참 고 사 항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36조, 제139조

구미시 조례 제 호

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 대해서 월 사용료의 10%를 감액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3조(사용료의 감액) 다음 각호에 해당 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액할 수 있다. 1.-4. (생략) (신 설)	제13조(사용료의 감액) 1.-4. (현행과 같음) 5. <u>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3세 이하</u> <u>의 여성에 대하여 월 사용료의 10%를</u> <u>감액할 수 있다.</u>

참 고 법 령

□ 지방자치법

제136조 (사용료)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제139조 (사용료의 징수조례 등) ①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.

발의자 서명명부

(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)

[illegible]